

의안번호	2213654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5.12.4.
추 계 번호	25D56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기금의 용도)제3호의2, 제6호의2, 7호 신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다음 사업을 추가 규정 -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기금의 용도)제3호의2, 제6호의2, 7호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남북협력기금 용도 추가(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¹⁾에 남북 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1)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정지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규정되어 있고²⁾,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하고 기적립된 이익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 기금의 용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될 사업 자금의 규모나 결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보전할 예산의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2)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5. (생략)

3)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